

| 일 | 러 | 두 | 기 |

1. 교정항목별 수수료표에 기재된 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한 주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주기로, 최적의 교정주기는 요구되는 측정불확도,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정주기 적용예시

사용하는 계량·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가 12개월로 정해져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일 10회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경우 3개월 주기
- 1일 2회 ~ 3회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주기
- 월 4회 ~ 5회 사용할 경우 12개월 주기 등

이는 사용하는 계량·측정기의 오류로 제품에 영향을 줄 경우 불량품 양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 교정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작업(측정점, 측정범위, 개수, 등급, 채널수, 기능수 등)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및 표준소급비로 구성됩니다.

- 기본 수수료 : 기본 항목 교정 수수료
- 추가 수수료 : 추가 작업(측정점, 측정범위, 개수, 등급, 채널수, 기능수 등)에 따른 추가 수수료
- 표준소급비 :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사업의 대가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에 사용

-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조사·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3. 기타 경비로 출장교정인 경우의 출장비, 수리가 필요한 경우의 수리비 등은 공인교정기관과 고객이 합의한 금액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4. 상황별 교정수수료 산정 기준

- 교정결과 사용이 부적합시 : 교정수수료의 50%(표준소급비 면제)
- 측정기 조정 전·후 2회 교정시 : 교정수수료의 150%
- 소재장소 출장 교정시 : 교정수수료의 120%
- 측정기 탈·부착, 루프교정시 : 교정수수료의 180%
- 적합성 진술시 : 교정수수료의 30% 이내

5. 개정된 교정항목별 수수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